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844
----------	-----

발의년월일 : 2011. 8. 25

발의자 : 신성봉 · 정현희 · 황세영 · 김지근
서경환 · 이효상의원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와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체결,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발주자에게 제출 등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대가 지급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현장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등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발주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 중 일부를 직접 지급 할 수 있는 대가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체불임금과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자 상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협조 및 자료요청,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우수업체에 대하여 자료요청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업체와 부진한 사업체 평가관리 등 실적 평가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공사·용역·계약 체결시 특수조건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사업이 완료되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 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근로자 상담) 구청장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도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구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44)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1. 8. 25(수)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신성봉 의원 외 5명
- 다. 위원회 회부 : 2011. 8. 26(목)
- 라. 위원회 상정 : 2011. 9. 6(화)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신성봉의원)

- 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와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 적용대상에 관한사항(안 제3조)
- 나. 계약체결 시 사업주의 책무와 대가 지급 시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현장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대가지급 게시(안 제4조, 5조)
- 다.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의 직접지급사항 및 체불임금과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로자 상담(안 제7, 8, 9조)
- 라. 우수업체와 부진한 업체 평가관리 및 홈페이지 게시(안 11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 공사 후 임금체불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생활 주변에 수시 발생하고 또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
 -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솔선수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현재 광역단체의 경우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3개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정 기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동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음
-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아울러 범 사회적 체불임금 방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